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우리구의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1조, 제2조)
- 나.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4조)
- 다. 지원 대상 (안 제5조)
- 라. 도시녹화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마. 수목 병·해충 방제 비용의 징수 및 지원 신청(안 제7조,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1474, E-mail : dongsuyeo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나무병원”이란 「산림보호법」 제2조제6호의5를 말한다.
3. “조경기술자”란 「조경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녹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작업내용별 지원물량, 지원시기,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3. 지원신청 및 절차와 전문가 자문, 도시녹화에 따른 정보제공 사항
4. 전년도 지원실적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도시녹화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단독주택,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등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녹화계약을 체결한 대상은 제외한다.

제6조(도시녹화 지원) 구청장은 생활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도시녹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험 수목 제거
2. 풍수해 피해 수목 정비
3. 수목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 유지관리 지원
4. 나무병원 및 조경기술자를 통한 도시녹화기술에 대한 자문, 지도 및 정보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목 병·해충 방제 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무분별한 병·해충의 확산과 이동을 방지하고, 건강한 도시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제6조제3호에 따라 수목 병·해충 방제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신청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라 도시녹화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료 등) 구청장은 제6조제4호에 따라 나무병원 및 조경기술자에게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도시녹화 지원 신청서 (제8조제1항 관련)

성명		단체명 (시설명)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H · P
E-mail			
신청내용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녹화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작구청장 귀하			